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 60호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관 및 휴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5조~안 제7조)

다.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및 반환, 감면,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안 제12조)

라. 관람료, 관람·행위의 제한, 변상조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안 제16조)

마.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 mpfive7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립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립문화예술시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 “부대시설”이란 문화시설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개관 및 휴관)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공연장에 한함)
3. 시장이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휴관일

제5조(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

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내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문화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인 경우
4.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허가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5.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기업의 홍보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행사
6. 그 밖의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 및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사용료 및 수강료

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4.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을 반환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 전액 면제

2.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기본시설 사용료만 면제

3.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전시 중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을 받고 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기획하여 주관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제11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제8조에서 정한 수강료 전액을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제12조(수강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 제26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시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

제13조(관람료) 시장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만취자

2. 화재위험·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안전장치 및 보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유아, 어린이, 중증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화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식물 섭취 또는 음주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는 행위
3. 녹음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5.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변상조치) 문화시설의 사용자나 관람자는 시설물 또는 전시품 등을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 운영 취소, 보고 및 감독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한 문화시설의 사용료 징수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수강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강한 강좌의 수강료에 대한 반환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위탁운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문화시설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의 위탁운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제1호 관련)

연번	명 칭	유 형	위 치
1	인천수봉문화회관	문화회관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안길 78(송의동)
2	인천국악회관	문화회관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안길 78(송의동)
3	미추홀문화회관	문화회관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1(전동)
4	문학시어터	공연장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문학동) (인천문학경기장내 야구장 1루 지하)

[별표 2]

문화시설의 사용 및 수강료(제8조 관련)

1. 인천수봉문화회관

가.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사 용 기 준	단 위	사 용 료	비 고
소 극 장	가. 1일 (09:00~22:00) 나. 오전(09:00~12:00) 다. 오후(13:00~17:00) 라. 야간(18:00~22:00)	1회 " " "	10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토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다음날 공연 준비를 위해 이용 시에는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함. ○공연 준비·철거로 22시 이후 이용 시에는 시간당 10,000원으로 함.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초과사용에 따른 요금은 다음과 같음. - 1시간 이상 초과 이용 시 :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30분 이상~60분 미만 초과 이용 시 :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30분 미만 초과 이용 시 :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전 시 실	1일 (09:00~21:00)	1일	50,000원	각 전시실별 (제1.제2전시실) 사용료임.
연 습 실 (연극연습실, 무용연습실, 합창실)	가. 1일 (10:00~21:00) 나. 오전(10:00~13:00) 다. 오후(14:00~17:00) 라. 야간(18:00~21:00)	1회 " " "	3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각 연습실별 사용료임. 냉, 난방 사용포함

※ 부가가치세 별도

나.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문화강좌	1월	5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다.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냉방	시간당	15,000원	7월~8월 필수
난방	시간당	15,000원	12월~2월 필수

※ 부가가치세 별도

라. 그 밖에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그랜드 피아노	1일 1회	30,000원	조율비 사용자 부담, 지정 조율사만 가능
빔프로젝트	1일 1회	10,000원	빔프로젝트 이외의 장비는 사용자가 준비
포그머신	1일 1회	10,000원	
마이크	1일 1대당	5,000원	기본 3개 제공, 소모품(배터리) 사용자준비

※ 부가가치세 별도

2. 인천국악회관

가.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사 용 기 준	단위	사용료	비 고
공 연 장	가. 1일 (09:00~22:00)	1회	100,000원	○토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다음날 공연 준비를 위해 이용 시에는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함. ○공연 준비·철거로 22시 이후 이용 시에는 시간당 10,000원으로 함.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초과사용에 따른 요금은 다음과 같음. - 1시간 이상 초과 이용 시 : 다음 회 사용료 전액 - 30분 이상~60분 미만 초과 이용 시 : 다음 회 사용료의 50퍼센트 - 30분 미만 초과 이용 시 :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나. 오전(09:00~12:00)	"	30,000원	
	다. 오후(13:00~17:00)	"	40,000원	
	라. 야간(18:00~22:00)	"	50,000원	
연 습 실	가. 1일 (10:00~21:00)	1회	30,000원	냉, 난방 사용포함
	나. 오전(10:00~13:00)	"	10,000원	
	다. 오후(14:00~17:00)	"	10,000원	
	라. 야간(18:00~21:00)	"	1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나.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월	50,000원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다.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냉방	시간당	15,000원	7월~8월 필수
난방	시간당	15,000원	12월~2월 필수

※ 부가가치세 별도

라. 그 밖에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빔프로젝트	1일 1회	10,000원	빔프로젝트 이외의 장비는 사용자가 준비
마이크	1일 1대당	5,000원	기본 3개 제공, 소모품(배터리) 사용자 준비

※ 부가가치세 별도

3. 미추홀문화회관

가.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사 용 기 준	단위	사용료	비 고
연 습 실	가. 1일 (10:00~21:00)	1회	30,000원	냉, 난방 사용포함
	나. 오전(10:00~13:00)	"	10,000원	
	다. 오후(14:00~17:00)	"	10,000원	
	라. 야간(18:00~21:00)	"	10,000원	

나.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월	50,000원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4. 문학시어터

가.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사 용 기 준	사용료	비 고
내 부	1일(09:00~22:00)	1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나.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냉방	시간당	10,000원	6월~8월 필수
난방	시간당	10,000원	12월~2월 필수

※ 부가가치세 별도

다. 그 밖에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빔프로젝터	1회	30,000원	빔프로젝트 이외의 장비는 사용자가 준비
포그머신	1회	30,000원	
촬영비	1회	100,000원	1방향 풀샷
회의실	1회	무료	3시간

※ 부가가치세 별도

관련법령 검토와 발제사항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17조 문화예술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재정 수반요인이 발생하나 기존 지원 사업으로 신규 발생은 아님.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5년(2018~2022)
- 위탁운영시설은 4개 시설로 가정
 - 인상율 : 최근 5년 공무원봉급 인상율 적용(2.86% 적용)

나.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 2018년도 895백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4,73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신규 발생은 아님.

시립문화예술시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계	894,730	920,310	946,630	973,700	1,001,560	4,736,930
수봉문화회관	404,240	415,800	427,690	439,920	452,510	2,140,160
국악회관	117,260	120,610	124,060	127,610	131,260	620,800
미추홀문화회관	167,510	172,300	177,230	182,290	187,510	886,840
문학시어터	205,720	211,600	217,650	223,880	230,280	1,089,130

다.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	-	-	-	-	-	-
	소계						
세출	일반회계	894,730	920,310	946,630	973,700	1,001,560	4,736,930
	소계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894,830	920,310	946,630	973,700	1,001,560	4,737,030
	일반회계	894,830	920,310	946,630	973,700	1,001,560	4,737,03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